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8. 24 선고 2022가단107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2.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1. 3. 8. 접수 제4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4,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2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45524), 이는 2019. 8. 24. 확정되었다.

나. C은 D의 상속인이다.

D은 남편이 먼저 사망한 이후인 2021. 2. 21. 술하에 피고, E, F, 위 C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로써 위 각 상속인들은 D을 1/4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21.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1. 3. 8. 접수 제4938호)를 마쳤다(이하 C과 피고 사이의 2021. 2. 2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다. 2020년 및 2021년 당시 C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다.

2020. 2. 21.부터 2022. 2. 21.사이 C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1.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상속 자체의 포기와는 그 요건, 효과 등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의 가액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7,700,000원(= 이 사건 협의분할에 가까운 2021. 1. 1. 당시 개별주택가격 30,800,000원 ÷ 4)에 불과하나, C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피보전채권만을 고려하더라도 11,666,534원[= 위 4,016,000원 + (위 4,016,000원 × 5% × 2004. 5. 21.부터 2005. 11. 24.까지 기간식 1과 188/365) + (위 4,016,000원 × 12% × 2005. 11. 25.부터 협의분할이 있는 것으로 보는 2021. 2. 21.까지 기간식 15와 89/365)]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C으로부터 받을 채무가 76,500,000원(= 1994. 8. 8.자 22,500,000원 + 2018. 5. 8.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포터 납입금 상당액 17,000,000원 + 2018. 12. 11.자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만큼 존재하고, C은 위 채무를 갚지 못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등기기록의 기재에 따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원인은 이 사건 협의분할로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이 이를 위 각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달리 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가 됨을 피하기 어렵다. 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하더라도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달리 불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원물반환)으로서 피고는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별지